

디지털 옥외광고 콘텐츠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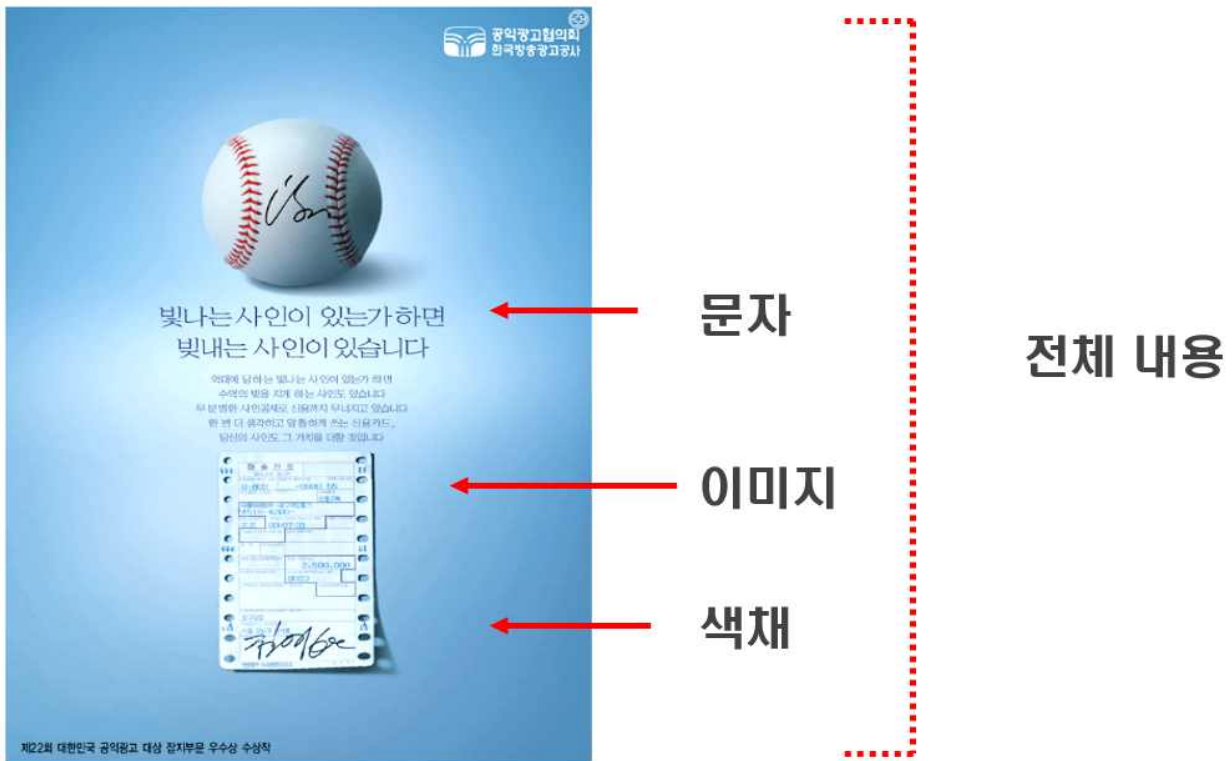
□ 필요성

- 디지털 옥외광고물 광고 신청 시 참고할 콘텐츠 가이드라인 필요
- 일관성 있는 행정 처리 및 도시의 품격을 저하하는 저급한 광고물의 난립 예방
- 신속하고 정확한 옥외광고 콘텐츠 심의를 위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규정 필요

□ 기본방향

-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광고
- 주변환경과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광고
- 정보가 잘 읽히고 전달되는 광고
-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광고

□ 콘텐츠 가이드라인 대상 : 내용, 문자, 이미지, 색채



1. 광고 금지 내용

- 난해한 문구나 이해하기 어려운 디자인은 지양
- 국가, 인종, 성, 연령, 직업, 계층, 지역, 장애 등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광고 금지
-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광고 금지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광고 금지
- 음란 또는 선정적 내용으로 성도덕 관념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 선전에 해당하는 광고 금지
- 음주나 흡연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이미지가 포함된 광고 금지
- 지나친 공포함이나 혐오함을 조성하는 광고 금지
- 대출, 대부업 등 시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 금지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을 표시할 수 없음

2. 광고의 문자

1) 표현 방법

- 문자는 간결하고 단순하게 표현한다.
- 가독성과 심미성을 고려하여 1~2개 이내의 글꼴 사용 권장
- 충분한 여백을 확보하고 문자의 굵기, 문자 폭과 간격을 조절하여 가독성을 높게 한다.
- 글자 수가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한다.
- 글자의 모양을 같은 크기나 굵기로 나열하기보다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의 모양을 크거나 굵게 하여 광고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한다.

2) 한글 표시 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 ※ 특별한 사유는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한글 또는 외국문자가 포함된 내용)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
-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글자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상표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는 부연 설명을 한다.
- 한글을 병기하는 경우 문자의 크기는 최소 바탕 높이의 10%이상으로 한다.

3) 문자의 크기

- 문자의 최대 크기는 바탕 높이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크기가 작아 가독성을 저해하는 문자의 사용을 지양한다.
- 이미지 범주에 속한 작은 문자는(광고면 바탕 높이의 5%)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문자크기정도	예시 이미지	사용여부	부연설명
광고면 바탕 높이의 40% 이내		사용가능	주로 주표기에 사용 권장
광고면 바탕 높이의 30% 이내		권장	주표기에 사용 권장
광고면 바탕 높이의 20% 이내		권장	주표기 및 보조표기에 사용 권장
광고면 바탕 높이의 10% 이내		사용가능	보조표기에 사용권장
광고면 바탕 높이의 5% 이내		조정필요	보조표기 사용시 10% 이상으로 크기 조정필요 이미지에 속하는 문자일 경우 허용

3. 그래픽 및 이미지의 표현

- 광고의 시인성과 주목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권장
- 문자의 나열보다는 조형적이고 간결한 형태의 그래픽 및 이미지 사용
-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픽 및 이미지 사용 지양
-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이미지 지양
- 영상의 경우 주·야간 빛의 눈부심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색상 및 화면변화가 난해하고 교통 및 보행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지러운 동영상은 지양하여야 한다.

4. 색채

- 바탕색과 내용색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광고물의 바탕색을 적색 또는 흑색류를 사용할 경우 바탕면의 50%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광고물의 바탕색에 자극적인 원색의 사용은 지양하고, 강조하려는 부분에만 포인트 색상을 사용한다.

붙임 1 관련 법규, 조례, 지침, 고시 등 준수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금융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비교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통합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 아래의 광고는 표시광고법 지양사례로 **광고 신청 시 승인이 어렵습니다.**

지양사례
1

대출금	100일	150일	200일
300만원	30,300원	20,400원	15,300원
500만원	50,500원	34,000원	25,500원
1,000만원	101,000원	68,000원	51,000원

특별 상품
대출금액 2,000만원 (월별 1,000만원) 상환기간 30일 상환일 1일 상환가중

납액히 200일로 쓰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직장인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 02) 444-1111

월이자 1.6%이하 이자와 및 연체이자율 연20%이하. 분할대출 50%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글자크기로
시인성 떨어짐

과도한 내용 배치로
여백을 확보하지 못해
시인성 저하

지양사례
2

나의 작은 실천이
지구 환경을 지킵니다!

♥

.....
텀블러+머그컵=지구사랑
.....

★ 친환경 소비 ★

원색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여
조화롭지 못하며,
시각적으로
혼란스러운 색채사용

▶ 아래의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사례로 **광고 신청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위반사례
1

당일 대출가능
24시간 신속상담
초저금리

하루이자 원금
2%부터
이게 실화냐!

현금이 부족할때
신용카드 잔액대출
신용카드 잔여한도만 남
아있다면 누구든 OK

콜 미 머니

문의: 1500-0000

원색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여
조화롭지 못하며
시각적으로
혼란스러운 색채사용
→ **지양**

대출에 대한 상세내용
미표기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 포함
→ **표시광고법 위반**

위반사례
2

오전 OR
낮시간대
섭취 권장

쾌청

화장실 직빵! 변비해결은 쾌청!

변비에 아주 탁월한 효과!

과민성 대장증후군뿐 아니라
뛰어난 함함 효과!
염증완화에 매우 효과적!!!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 우려
→ **표시광고법 위반**

위반사례
3

해뜰날 성형외과

시

“얼굴소멸주사”

“딱 15분
바이러스 면역력 증강주사”

저희 해뜰날 성형외과는 다양한 치료 경험과 노하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꾸준히 찾아주고 계십니다.

시술효과에 대한 객관적 사실확인 불가
→ 표시광고법 위반

사람들이 오인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문구
→ 표시광고법 위반

위반사례
4

상가 분양 임대

월 300만원

연 수익율 12% 혜택을 잡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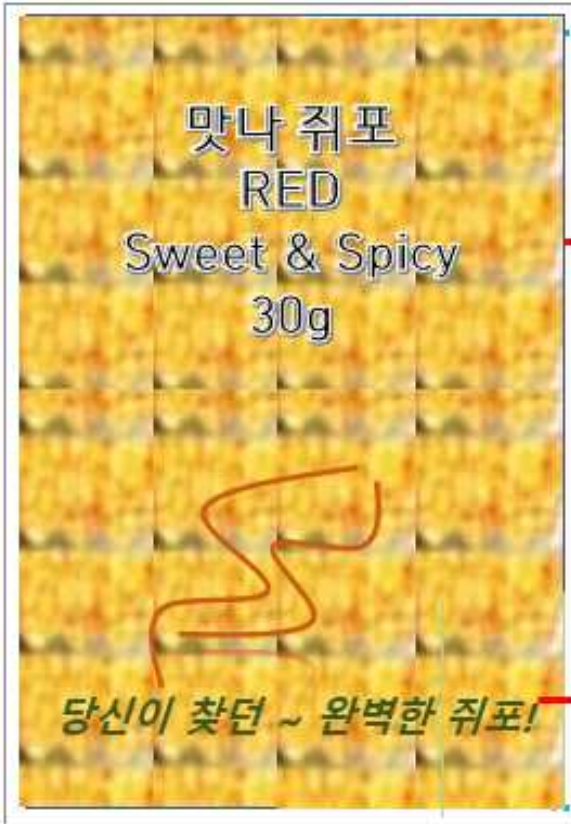
대형학원/식당/편의점
병원/한의원/독서실

적색류 배경색 사용
→ 지양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
→ 표시광고법 위반

수익률 산출방법 미기재
→ 표시광고법 위반

위반사례
5



혼란스러운
배경색 사용
→ **지양**

쥐포의 원료인
쥐치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음
→ **표시광고법 위반**